

의안 번호	2496	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11. 11.(화) 안영호 의원 외 4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2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 (안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’ 의결 및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항 제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94조)
 - 중계방송 등 → 녹음·녹화 등
-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4조의2)
-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4조의3)
-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및 제55조)
 - 홈페이지 → 누리집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제75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홍숙)

-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, 민주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

- 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」 (2024.7.22.의결)

- 기초의회 회의 실시간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(조치기한 2026.12.31.)
 - 1) 비공개대상 회의를 제외한 회의 중계 및 공개
 - 지방의회 홈페이지, 인터넷 플랫폼, 지역방송 등에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(본회의, 상임위, 특별위 등)를 실시간중계하고, 영상회의록 공개
 - 2) 기초의회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 마련
 - 「회의규칙」 등에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신설 및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대상 및 공개기한 등을 포함한 운용 규정 마련

○ 개선안(예시)

현행	개선(안)
<p>「회의규칙」 또는 의사 중계 관련 규정 <u>< 신 설 >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「회의규칙」 또는 의사 중계 관련 규정 제00조 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.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제00조 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.</p>